

[경영통일공시자료]

2023 년 3/4 분기
스위스리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현황

기간: 2023.1.1 - 2023.9.30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스위스리아시아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목 차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II. 재무·손익

III. 자산의 건전성

IV. 자본의 적정성

V. 수익성

VI. 위험관리

VII. 기타 일반현황

VIII. 재무제표

I. 주요경영현황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당기 (23.3Q) | 전년 동기 (22.3Q) | 증 감 |
|--------|--------------------|---------------|------------------|-------|
| 재무·손익 | 자 산 | 12,256 | 11,091 | 1,165 |
| | 부 채 | 5,927 | 5,265 | 663 |
| | 자 본 | 6,328 | 5,826 | 502 |
| | 당기순이익 | 460 | -419 | 879 |
| 건전성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 — | — | — |
|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 — | — | — |
| 수익성 비율 | 운용자산이익률 | 2.73 | 1.56 | 1.17 |
| | 영업이익률 | 19.60 | -1.29 | 20.89 |
| | 총자산수익률(ROA) | 5.30 | -4.96 | 10.25 |
| | 자기자본수익률(ROE) | 10.86 | -12.93 | 23.78 |

* 지급여력비율은 12 월말 공시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 3 조)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

* 주요변동요인 : 보험손익의 증가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Q~3Q (IFRS17/9 기준), 22.4Q(IFRS4/IAS39), 22.1Q~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II. 재무·손익

2-1.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 | 당기 (23.3Q) | 전년 동기 (22.3Q) | 증 감 |
|-----------------|------------|---------------|------------------|-------|
| 보험 부문 | 보험손익 | 595 | -283 | 879 |
| | (보험수익) | 5,901 | 5,487 | 414 |
| | (보험서비스비용) | 4,884 | 5,749 | -865 |
| | (재보험수익) | 998 | 1,066 | -68 |
| | (재보험서비스비용) | 1,370 | 1,110 | 260 |
| | (기타사업비용) | 50 | -22 | 73 |
| 투자 부문 | 투자손익 | 37 | -22 | 59 |
| | (투자수익) | 240 | 192 | 48 |
| | (투자비용) | 203 | 214 | -11 |
|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 | 632 | -306 | 938 |
| 영업외 부문 | 영업외손익 | -34 | -240 | 205 |
| | (영업외수익) | -3 | 0 | -4 |
| | (영업외비용) | 31 | 240 | -20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598 | -545 | 1,143 |
| 법인세비용(수익) | | 138 | -126 | 264 |
| 당기순이익(손실) | | 460 | -419 | 879 |

* 주요변동요인 : 보험손익의 증가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Q~3Q (IFRS17/9 기준), 22.4Q(IFRS4/IAS39), 22.1Q~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2-2. 요약 재무상태표(총괄)

(단위 : 억원, %)

| 구 분 | | (23.3Q) | | 전년 동기 (22.3Q) |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자 산 | 현 금 및 예 치 금 | 67 | 0.54 | 63 | 0.57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0 | 0.00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0 | 0.0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6,882 | 56.15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5,893 | 53.13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0 | 0.00 |
| | 상각후 원가측정 유가증권 | 0 | 0.00 | - | - |
| | 관계 · 종속기업 투자주식 | 0 | 0.00 | 0 | 0.00 |
| | 대 출 채 권 | 0 | 0.00 | 0 | 0.00 |
| | 부 동 산 | 0 | 0.00 | 0 | 0.00 |
| | 비 운 용 자 산 | 5,307 | 43.30 | 5,135 | 46.30 |
| | 기 타 자 산 | 0 | 0.00 | 0 | 0.00 |
| | 특 별 계 정 자 산 | 0 | 0.00 | 0 | 0.00 |
| | 자 산 총 계 | | 12,256 | 100.00 | 11,091 |
| 부 채 | 책 임 준 비 금 | 4,640 | 37.86 | 4,410 | 39.76 |
| | 계 약 자 지 분 조 정 | 0 | 0.00 | 0 | 0.00 |
| | 기 타 부 채 | 1,288 | 10.51 | 855 | 7.71 |
| | 특 별 계 정 부 채 | 0 | 0.00 | 0 | 0.00 |
| | 부 채 총 계 | | 5,927 | 48.36 | 5,265 |
| 자본 | 자 본 총 계 | 6,328 | 51.64 | 5,826 | 52.53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12,256 | 100.00 | 11,091 | 100.00 |

* 주요변동 요인 : 기타부채 증가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Q~3Q (IFRS17/9 기준), 22.4Q(IFRS4/IAS39), 22.1Q~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Ⅲ. 자산의 건전성

3-1. 자산건전성(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p)

| 구 분 | 당기 (23.3Q) | 전년 동기 (22.3Q) | 전년대비 증감 |
|-----------------|---------------|------------------|---------|
| 가중부실자산(A) | 0 | 0 | 0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 8,992 | 7,881 | 1,111 |
| 비율(A/B) | 0.00 | 0.00 | 0.00 |

* 주요변동 요인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의 증가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Q~3Q (IFRS17/9 기준), 22.4Q(IFRS4/IAS39), 22.1Q~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3-2.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 구 분 | | 공정가액 ¹⁾ | 평가손익 |
|--------------|---------------------------------|--------------------|-------|
| 일반 계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A) | 주 식 | 0 |
| | | 출 자 금 | 0 |
| | | 채 권 | 0 |
| | | 수 익 증 권 | 0 |
| | | 외화표시유가증권 | 0 |
| | | 기타유가증권 | 0 |
| | | 0 | 0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B) | 주 식 | 0 |
| | | 출 자 금 | 0 |
| | | 채 권 | 6,882 |
| | | 수 익 증 권 | 0 |
| | | 외화표시유가증권 | 0 |
| | | 기타유가증권 | 0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C) | 채 권 | 0 |
| | | 수 익 증 권 | 0 |
| | | 외화표시유가증권 | 0 |
| | | 기타유가증권 | 0 |
|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D) | 주 식 | 0 |
| | | 출 자 금 | 0 |
| 기 타 | | 0 | |
| 소 계(A+B+C+D) | | 6,882 | -235 |
| 특별계정 | 주 식 | 0 | |
| | 채 권 | 0 | |
| | 수 익 증 권 | 0 | |
| | 외화유가증권 | 0 | |
| | 기타유가증권 | 0 | |
| | 소 계 | 0 | |
| 합 계 | | 6,882 | -235 |

주 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IV. 자본의 적정성

4-1. B/S 상 자기자본

(단위 : 억원)

| 구 분 | 당분기 (23.3Q) | 당분기-1 분기 (23.2Q) | 당분기-2 분기 (23.1Q) |
|-----------|----------------|---------------------|---------------------|
| 자본총계 | 6,328 | 6,033 | 5,505 |
| 자본금 | 2,494 | 2,494 | 2,090 |
| 자본잉여금 | -3 | -3 | -3 |
| 신종자본증권 | 0 | 0 | 0 |
| 이익잉여금 | 3,354 | 3,291 | 3,509 |
| 자본조정 | 0 | 0 | 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3 | 251 | -92 |

* 주요변동요인 : 2023 년 2 분기 중 404 억원의 증자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 효과 등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Q~3Q (IFRS17/9 기준), 22.4Q(IFRS4/IAS39), 22.1Q~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4-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은 12 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 3 조)

V. 수익성

□ 수익성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당기 (23.3Q) | 전년 동기 (22.3Q) | 증감 |
|-----|--------------|---------------|------------------|-------|
| | 투자이익(A) | 174 | 90 | 84 |
| | 경과운용자산(B) | 6,365 | 5,745 | 620 |
| (1) | 운용자산이익률(A/B) | 2.73 | 1.56 | 1.17 |
| (2) | 영업이익률 | 19.60 | -1.29 | 20.89 |
| (3) | 총자산수익률(ROA) | 5.30 | -4.96 | 10.25 |
| (4) | 자기자본수익률(ROE) | 10.86 | -12.93 | 23.78 |

* 주요변동요인 : 보험손익의 증가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3Q (IFRS17/9 기준), 22.4Q (IFRS4/IAS39), 22.1~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VI. 위험관리

6-1. 비례성원칙 적용현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Ⅶ. 기타 일반 현황

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 해당사항 없음

7-2.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단위 : 억원)

| 구 분 | 당분기 (23.3Q) | 직전분기 (23.2Q) |
|----------|----------------|-----------------|
| 이익잉여금 | 3,354 | 3,291 |
| 대손준비금 | 0 | 0 |
| 비상위험준비금 | 444 | 415 |
| 해약환급금준비금 | 0 | 0 |
| 보증준비금 | 0 | 0 |

* 주요변동요인 : 당기순이익 변동의 영향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3Q (IFRS17/9 기준), 22.4Q (IFRS4/IAS39), 22.1~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7-3. 민원발생건수 : 해당사항 없음

7-4. 사회공헌활동

7-4-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 구분 | 사회공헌 기부금액 | 전담 직원수 | 내규화 여부 | 봉사인원 | | 봉사시간 | | 인원수 | | 당기 순이익 |
|----------|--------------|-----------|-----------|------|-----|------|-----|-----|-----|-----------|
| | | | | 임직원 | 설계사 | 임직원 | 설계사 | 임직원 | 설계사 | |
| 3Q 누적 | 0 | 0 | X | 15 | 0 | 60 | 0 | 53 | 0 | 45,995 |

7-4-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 분야 | 주요 사회공헌활동 | 기부(집행)금액 | 자원봉사활동 | | | |
|-----------|--------------|----------|--------|----|-----|----|
| | | | 임직원 | | 설계사 | |
| | | | 인원 | 시간 | 인원 | 시간 |
| 지역사회.공익 | 아동 양육 시설 | 0 | 15 | 60 | 0 | 0 |
| 문화.예술.스포츠 | - | 0 | 0 | 0 | 0 | 0 |
| 학술.교육 | - | 0 | 0 | 0 | 0 | 0 |
| 환경보호 | - | 0 | 0 | 0 | 0 | 0 |
| 글로벌 사회공헌 | - | 0 | 0 | 0 | 0 | 0 |
| 공동사회공헌 | - | 0 | 0 | 0 | 0 | 0 |
| 서민금융 | - | 0 | 0 | 0 | 0 | 0 |
| 기타 | - | 0 | 0 | 0 | 0 | 0 |
| 총 계 | | 0 | 15 | 60 | 0 | 0 |

*23년 3분기 누적실적 기준임

VIII. 재무제표

8-1.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 과 목 | 당기 | 전기 기말 | 증감(액) |
|---------------|--------|--------|--------|
| 자산총계 | 12,256 | 13,526 | -1,270 |
| I. 운용자산 | 6,948 | 6,513 | 436 |
| II. 비운용자산 | 5,307 | 7,013 | -1,706 |
| 부채총계 | 5,927 | 10,640 | -4,713 |
| I. 책임준비금 | 4,640 | 5,522 | -882 |
| II. 계약자지분조정 | 0 | 0 | 0 |
| III. 기타부채 | 1,288 | 5,118 | -3,830 |
| 자본총계 | 6,328 | 2,885 | 3,443 |
| I. 자본금 | 2,494 | 2,090 | 404 |
| II. 자본잉여금 | -3 | -3 | 0 |
| III. 신종자본증권 | 0 | 0 | 0 |
| IV. 이익잉여금 | 3,354 | 829 | 2,525 |
| V. 자본조정 | 0 | 0 | 0 |
|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83 | -31 | 514 |
| 부채와자본총계 | 12,256 | 13,526 | -1,270 |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3Q (IFRS17/9 기준), 22.4Q (IFRS4/IAS39), 22.1~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8-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 과 목 | 당기 | 전년동기 | 증감(액) |
|---------------------------|-------|-------|-------|
| I. 보험손익 | 595 | -283 | 879 |
| 1. 보험수익 | 5,901 | 5,487 | 414 |
| 2. 보험서비스비용 | 4,884 | 5,749 | -865 |
| 3. 재보험수익 | 998 | 1,066 | -68 |
| 4. 재보험서비스비용 | 1,370 | 1,110 | 260 |
| 5. 기타사업비용 | 50 | -22 | 73 |
| II. 투자손익 | 37 | -22 | 59 |
| 1. 투자수익 | 240 | 192 | 48 |
| 2. 투자비용 | 203 | 214 | -11 |
| III. 영업이익(또는영업손실) | 632 | -306 | 938 |
| IV. 영업외손익 | -34 | -240 | 205 |
| 1. 영업외수익 | -3 | 0 | -4 |
| 2. 영업외비용 | 31 | 240 | -209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98 | -545 | 1,143 |
| VI. 법인세비용 | 138 | -126 | 264 |
| VII. 당기순이익(손실) | 460 | -419 | 879 |
| VIII. 기타포괄손익 | 197 | -191 | 388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203 | -33 | -170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손실충당금 | 0 | 0 | 0 |
| 3.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461 | -107 | 568 |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60 | -51 | -9 |
| 5.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0 | 0 | 0 |
| 6.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 7.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 8. 재평가잉여금 | 0 | 0 | 0 |
| 9. 보험수리적손익 | 0 | 0 | 0 |
| 10. 기타 | 0 | 0 | 0 |
| IX. 총포괄손익 | 657 | -610 | 1,268 |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23.1~3Q (IFRS17/9 기준), 22.4Q (IFRS4/IAS39), 22.1~3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8-3.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분석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 주요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①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 대출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또는 수재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또는 수재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②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3 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3 년 1 월 1 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재무 영향분석

2022 년 12 월 31 일 기준 재무상태표 및 2022 년 9 월 30 일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 과 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 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증 감(액) |
|---------------|------------------|------------------|--------|
| 자산총계 | 13,526 | 10,895 | -2,630 |
| I. 운용자산 | 6,513 | 6,512 | 0 |
| II. 비운용자산 | 7,013 | 4,383 | -2,630 |
| 부채총계 | 10,640 | 5,929 | -4,711 |
| I. 책임준비금 | 5,522 | 4,979 | -543 |
| II. 계약자지분조정 | 0 | 0 | 0 |
| III. 기타부채 | 5,118 | 950 | -4,169 |
| 자본총계 | 2,885 | 4,966 | 2,081 |
| I. 자본금 | 2,090 | 2,090 | 0 |
| II. 자본잉여금 | -3 | -3 | 0 |
| III. 신종자본증권 | 0 | 0 | 0 |
| IV. 이익잉여금 | 829 | 2,783 | 1,953 |
| V. 자본조정 | 0 | 0 | 0 |
|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1 | 96 | 127 |
| 부채와자본총계 | 13,526 | 10,895 | -2,630 |

②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 과 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 호 | 과 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증 감(액) |
|------------------|---------------------|------------------|---------------------|--------|
| I. 보험영업손익 | 561 | I. 보험영업손익 | -283 | -844 |
| II. 투자영업손익 | 53 | II. 투자영업손익 | -22 | -75 |
| III. 영업이익 | 614 | III. 영업이익 | -306 | -919 |
| IV. 영업외수익 | 15 | IV. 영업외수익 | 0 | -15 |
| V. 영업외비용 | 24 | V. 영업외비용 | 240 | 216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05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5 | -1,150 |
| VII. 법인세비용 | 118 | VII. 법인세비용 | -126 | -244 |
| VIII. 분기순이익 | 487 | VIII. 분기순이익 | -419 | -906 |
| IX. 기타포괄손익 | -39 | IX. 기타포괄손익 | -191 | -153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39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33 | 6 |
| | | (2) 보험금융손익 | -107 | -107 |
| | | (3) 재보험금융손익 | -51 | -51 |
| X. 총포괄손익 | 448 | X. 총포괄손익 | -610 | -1,059 |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 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유의적인 재무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 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 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 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 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주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 단계로 구분하여 12 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주 1) |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 2) | 12 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 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주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4)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서는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